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2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주진우·김대식·김 건

윤한홍 • 나경원 • 김승수

김희정 • 서지영 • 김은혜

엄태영 • 박정하 • 이헌승

우재준 · 송석준 · 김민전

정성국 • 권성동 • 김도읍

정희용 • 곽규택 • 송언석

박준태 • 이인선 • 배준영

최형두 • 백종헌 • 김미애

유용원 • 박수영 • 정연욱

김소희 · 최보유 · 조배숙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구체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제도를 남용한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경우, 위헌 심판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등 재판을 현저히 지연한 경우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의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와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민이 사법 제도와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의 근간을 더욱 견고히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재판 진행을 현저히 지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 또는 제378조에 따른 소송기록접 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 한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를 반복하며 재판 진행을 고의 로 지연하게 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을 반복하여 재판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게 한 경우
 - 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 진행을 지연하게 한 경우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를 악용할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를 탄핵소추하여 재판 진행을 지연하게 한 경우
 -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 여부 심판 신청을 남용 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 사.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여 재판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게 한 경우
- 아. 그 밖에 재판을 현저히 지연하게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안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 |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신 설> 6.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 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재판 진행을 현저히 지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 의 2 또는 제378조에 따른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 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 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교체를 반복하며 재판 진 행을 고의로 지연하게 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기 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을 반복하여 재판 진행을 고

의로 지연하게 한 경우 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남용 하여 재판 진행을 지연하 게 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를 악용할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를 탄핵소추하여 재판 진행을 지연하게 한 경우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 여부 심판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사.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여 재판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게 한 경우

아. 그 밖에 재판을 현저히 지연하게 했다고 인정되는경우